

2014년 개정세법 – 법인과세 관련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러 세제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사 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 시 세제지원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의금산입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

개정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 공제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개정 조특법 제144조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개정 조특법에서는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조특법 제12조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

개정 조특법에서는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할 경우,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조특법 제34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개정 조특법에서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 조특법 제30조의 2).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R&D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기한 종료 등 주요 축소·폐지 제도

개정 조특법은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 정책목적 달성에 관한 항목 및 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 항목을 대대적으로 축소·폐지하였으며, 구체적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지 및 축소사항	개 정 이 유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 (개정 조특법 제9조 제1항)	R&D 준비금은 국제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일부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개정 조특법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이 정착되고 법적 의무화된 점을 감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종료 (개정 조특법 제104조의15)	• 세액공제대상이 대부분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적 투자로서 해외자원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금융지원 등이 중복되고 있음을 감안
외국인 투자자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개정 조특법 제121조의2)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 정비 (2014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 결정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적용기한 종료 (개정 조특법 제8의2)	• 지원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3. 물적분할 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이하 “개정 법인세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우회적인 지분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등의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물적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법인세법 제47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주식 등의 보유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4.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완화하여 세율을 종전 “법인세율 + 30%”에서 “법인세율 + 10%”로 조정하였습니다(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제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8조).

5.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제도 개선

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상여처분을 예상할 수 없어 원천징수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배제하고자, 아래 상여처분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임직원 본인이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소득세법 제155조의4).

- 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인수”라 합니다)되는 경우
- 인수 후 피인수법인의 회생절차 개시 전 임직원의 횡령 등에 대한 사외유출로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조 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213 | E-Mail. ccho@shinkim.com |
| ● 황인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365 | E-Mail. i shwang@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